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7 선고 2022가단72065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문민철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90,000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7.부터, 5,3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화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7. 22. 피고와 사이에 “삼각티백 & 필로우 외포장 일체형 기계” 제작 납품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53,900,000원 (계약금 27,000,000원 + 잔금 26,900,000원)

납품기일: 2021년 9월 중순

제6조: “갑(원고)”은 “을(피고)”이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지체한 때 또는 “을”이 계약이행을 포기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및 그로 인한 “갑”의 시간적 손실로 인한 부분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을”이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을”은 계약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의 손해부분에 대하여 계약 총금액의 10%를 “갑”은 계약해지보상금 명목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21. 7. 27. 피고에게 계약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그때까지 제작한 기계로 2021. 10. 1. 테스트한 결과, 외포장지 앞면에는 선이, 뒷면에는 스크래치가 생기는 문제(이하 ‘외포장지 주름 문제’라 한다)가 있었다. 이후 피고가 설계를 수정하여 2021. 10. 14., 2021. 10. 26. 테스트하였는데, 외포장지 주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2021. 10. 26. 만나 외포장지 주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 3주 정도 추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가 2021. 11. 29. 피고에게 연락하여 재촉하자, 피고는 2021. 12. 7. 원고 참관 하에 시운전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시운전하기로 한 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아무래도 비싼 장비(외포장 일체형이 아닌 티백만 생산하는 장비)로 바꿔드리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그냥 반환해 드리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며 계약금 뿐 아니라 위약벌 금액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약벌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언쟁 끝에 통화는 종료되었고, 피고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원고에게 “제안은 철회하고 기계는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입고시키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21.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계약금 27,000,000원과 위약벌 5,39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반송하고, 2021. 12. 20. ”외포장지 주름 문제는 계약 당시 설명하였던 것이고, 기계는 완성 되어 출고할 수 있으니 기계를 납품할 일정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외포장지 주름 문제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외포장지 주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2021. 12. 7. 피고의 계약 이행 거부(또는 포기) 및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7,000,000원 및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위약벌(계약대금의 10%인 5,3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외포장지 주름 문제가 없는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외포장지 주름 문제가 없는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외포장지 주름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외포장지 주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계약상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 노력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하기로 한 기계는 원료(커피나 차류 가루), 속포장지(티백), 외포장지를 기계에 투입하면 원료가 들어있는 티백이 외포장지 안에 들어간 상태로 한꺼번에 포장되어 나오는 기계이다. 피고가 제작한 기계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외포장지 주름 문제는 미관상

문제일 뿐 식재료를 이중으로 포장하는 기능과는 무관하다. 실제로도 원고는 (주)D에 "멀치 디포리 다시팩" 포장용 일체형 기계를 납품하였는데, "멀치 디포리 다시팩"은 외포장지에 주름이 있는 상태로 제조되고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제공한 제품설명서에는 주름이 없는 상태로 포장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견과류를 한 겹의 포장지로만 감싼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결과물과는 차이가 있고, 사진 바로 아래에 "참고용 사진이며, 사용 원료 확인 후 설계 변경시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외포장지 주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2021. 7. 8.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외포장지에 주름이 있는 "멀치 디포리 다시팩"을 확인하고, 손으로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원고의 가족과 무엇인가를 의논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2021. 12. 7. 원고로부터 전화로 위약벌 지급을 요구받자마자 "사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제가 그 라인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했어요"라고 외포장지 주름 문제를 처음부터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만약 피고가 그러한 얘기를 한 적 없다면, 원고가 바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함이 상당한데, 원고는 "더 이상 변명 듣지 않고 싶지 않다"라고만 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였고, 기계를 납품하겠다는 원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외포장에 발생하는 주름은 원단에 따라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다양한 원단을 구하여 테스트하였다. 다양한 원단을 누가 구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원고 역시 외포장지 주름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작한 기계에 외포장지 주름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행거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